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459
-----------	------

2026년 3월 10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아이수루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이수루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다만, 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문학

실천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인문교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지원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나. 인문교육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다. 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아이수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459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협의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우수사례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조성으로 인문교육의 질적 향상과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해력 강화를 국가교육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음.
- 특히 AI·디지털 기기 의존에 따른 문해력 저하 현상에 대응¹⁾하기 위해 단순 독서를 넘어선 ‘심층적 탐구와 글쓰기’를 강조하며, 대학 및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고품질 인문교육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권고해왔음.

1) 국정과제 99-5(대한민국 정부./ '25.9)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초·중·고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인문사회 우수 장학생 지원 확대 및 기초·인문학 교육·연구 활성화

○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러한 국가적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난 2025년 12월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깊이 있는 학습’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개념기반탐구독서(개념탐독)’ 모델 정립 및 ‘독서중점학교²⁾(인문학 실천학교)’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내실화할 수 있는 서울형 인문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표-1] 서울시교육청 2026년~2030년까지 중기 추진 전략³⁾



2)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2025.12.17., ‘AI시대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서울’ 독서교육 비정 선포, 중 발췌
 독서중점학교는 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독서를 중심에 두어 학생들의 사고력과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교과별 독서 활동의 생활화를 통해 독서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임(초·중학교)
 인문학 실천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임

3) 「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 6p

[표-2] 서울시교육청 인문교육 관련 주요 사업 현황4)

주요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교실 속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독서교육 (수업 연계)	개념기반탐구독서(개념탐독) 운영 (신규)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닌, '핵심 개념 20'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심화확장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서울형 독서 수업 모델
	디지털 독서 개념 배지 시스템 (신규)	학생의 독서 이력과 탐구 과정을 디지털 형태로 시각화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맞춤형 독서 지도 및 진로 설계와 연계
	대학 연계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고등학생과 박사급 연구자가 함께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토론하며 쓰기까지 이어가는 고도의 인문학 프로그램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인문교육 (삶과 연계)	인문학 실천학교 운영 (신규)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요소가 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전반에 스며들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성 및 윤리적 판단력을 함양하는 거점 학교
	독서·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초등(첫 책 만나기) - 중등(첫 책 쓰기) - 고등(첫 책 되기 - 사람책)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가족 책 만들기 프로젝트	가족이 함께 독서하고 공동 저자가 되어 책을 발간함으로써 가정 내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사업
학교 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문화 확산)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등교 직후나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활동
	교육 3주체 독서동아리 활성화	학생, 교사(전문적 학습공동체), 학부모가 각각 또는 함께 참여하는 독서동아리 운영 및 예산을 지원
	10분 집중 독서	수업 시작 전이나 특정 시간을 활용하여 몰입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
지속 가능한 독서·인문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독서·토론교육자문관 및 교사단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현장 실천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교사 연구 네트워크를 가동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	동네서점 연계 시민대화모임, 지역 도서관 협력프로그램(도서관 창의 체험 등)을 통해 학교 밖까지 인문학 공간을 확장
	AI·디지털 연계 독서 지원	전자책 활용 확대 및 AI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도서 추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

○ 금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이 독서를 중심으로 한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더욱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 과정을 거쳐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4) 「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 중 인문교육 관련 각 사업별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사업 시행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제 실행 위주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인문학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문교육 관련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인문교육의 질적인 도약을 도모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고히 하려는 정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인문학 교육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시행계획 수립(제6조)에 관한 검토

- 안 제6조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령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⁵⁾

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시행계획에 따른 인문교육 실시에 관한 노력 의무를 명문화한 것임.

- 더욱이 학교 현장 여건과 학생 수요 등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문교육에 대한 맞춤형 시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는바, 안 제6조제2항과 같은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2항의 내용 중 ‘양질’이라는 표현은 법령과 조례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시행계획을 통해 교육 콘텐츠의 전문성, 강사의 역량 검증,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 구체적인 질적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제3항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전체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인문교육 정책 기조와 단위 학교 현장의 실무적 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사료됨.

-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학생의 성찰과 탐구 과정을 시각화하여 인증하는 「디지털 독서 개념 배지」 시스템 도입을 예고하고 있음.⁶⁾

5)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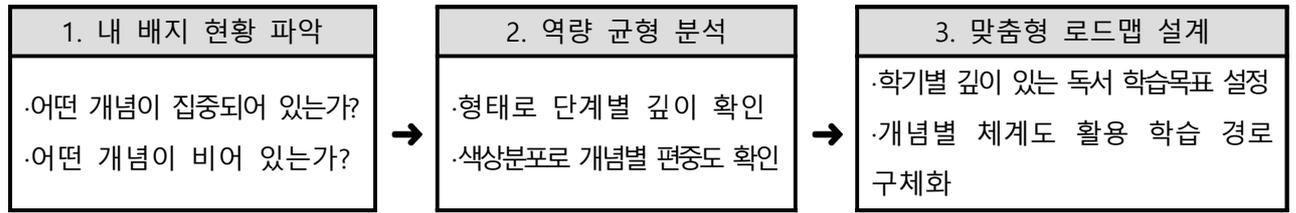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 18p, [표-3] 동일

(가칭) 디지털 독서 개념 배지 : 학생이 ‘서울 독서교육 핵심 개념 20’과 연계된 도서를 탐독하고, 이를 통해 얻은 성찰을 현실 문제에 적용·전이하는 일련의 탐구 과정을 거치면 그 성장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시각화하여 인증하는 제도

[표-3] 디지털 독서 개념 배지(깊이 있는 독서·토론 인문학 학습 로드맵)⁷⁾



- 이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인문교육의 객관적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바, 학교별로 다양하게 추진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배지 발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임.
- 그러므로 안 제6조제3항은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계획을 존중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실무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현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을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6조제4항은 서울시교육청이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학계나 전문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문학, 철학, 사학 등 고도의 학문적 깊이가 요구되는 인문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사업 범위 확대 및 민간위탁 근거에 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는 인문교육 진흥 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학습 ‘프로그램 지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확대하고, ‘수요조사 및 홍보’ 기능을 추가로 규정한 것임.
- 이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 모델

7) 각주5)와 동일, 주- 디지털 독서 개념 배지는 일련인 탐구 과정을 완수한 학생에게 디지털 배지를 발급함으로써 독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독서 지도 및 진로 설계에 연계함

을 직접 기획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내용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은 인문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대학 연계 심층 프로그램’이나 ‘전문연구진이 참여하는 교육 모델 개발’⁸⁾ 등 내부 역량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인프라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안 제8조제2항은 인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교육 현장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수행 환경을 안정적으로 정비한 시의 적절한 조항으로 사료됨.
-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시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우수사례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검토(안 제10조, 제12조)

- 안 제10조는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문교육의 우수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임.
- 이는 서울시교육청 주도의 일방적인 지침 전달에서 벗어나, 학교별로 축적된 성공적인 교육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울 인문교육 정책의 전

8) 「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 추진과제 2-4. 대학 연계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반적인 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됨.

- 실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2025 독서·토론·쓰기 수업 및 활동 실천 사례집」⁹⁾을 살펴보면, ‘그림책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 ‘문학적 서사를 결합한 수학 수업’, ‘AI 시대를 주제로 한 윤리적 딜레마 토론’ 등 일선 학교에서 이미 매우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인문 융합 교육이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10조의 신설이 갖는 의미는 현장의 개별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 축적된 우수한 교육 모델들이 단순히 해당 학교의 성과에 머물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으므로 개정 취지와 내용적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안 제12조는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임.
- 이는 학교 내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문학적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실무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 특히 동 조문은 안 제8조제2항의 민간위탁 근거와 안 제10조의 우수사례 발굴 조항과 함께 현장의 창의적인 교육 성과를 외부의 전문 역량과 결합하여 서울 교육 전반에 안정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유기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바, 조례안 체계 구성상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행정관리담당관-2277, 2026. 2.20.)

9) 「2025 독서·토론·쓰기 수업 및 활동 실천 사례집」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개발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인문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생 략)</p> <p> <신 설></p> <p> <신 설></p> <p> <신 설></p> <p>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p>	<p>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p> <p>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 ② <u>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 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u></p> <p> ③ <u>교육감은 학교의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 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u></p> <p> ④ <u>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u></p> <p>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프로그램 개 발 및 -----</p>

4. ~ 6. (생략)

<신설>

7.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 (생략)

<신설>

제11조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인문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